

간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9. 강선우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7. 22.)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7.)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우의원)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지민)

□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변화 등으로 증가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돌봄 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독립적인 간호 관련 법률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법률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견이 있음.

- 종합적 간호정책의 일환으로 간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간호서비스 영역이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간호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율적·확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관련 지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지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각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총괄적 검토)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하여는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 등에 대하여 관련 직역단체들로부터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각 제정안은 제21대 국회 의결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다양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간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정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제정안은 제21대 국회 의결안과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당초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들이 제21대 국회 의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은, 당초 제기되었던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들은 ‘지역사회’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추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하여 제시되었던 우려가 지속될 수 있음.

□ 둘째, 각 제정안은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와 과도한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 간호사의 현실¹⁾을 개선하고 PA간호사 등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유사한 취지로 보이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지원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강선우의원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직역 간 이견을 좁히면서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라는 점에서 하위법령을 통해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진료지원업무 등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일일이 하위법령에서 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추경호의원안)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

1) “간호사들, 간호업무 외 과도한 일로 병원 떠났다”, 헬스포커스뉴스, 2023. 6. 7.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10>)

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지원업무와 관련된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 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하여 관련 직역단체들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셋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각 제정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경호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이수자 등 각 호의 응시자격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에 따르더라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곧바로 국가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호학원의 교습과정 등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제기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추경호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자격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응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학력 상한 논란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을 「의료법」에서 간호관련 법안에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간호사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 서비스로 그 내용을 간호 관련 법률에서 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